

#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9호 2002. 3. 9)

총무위원회  
2002. 3. 15(금)

## 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3. 9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2. 3. 9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2. 3. 13 사천시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## 2. 제안설명요지(문화공보실장 정대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부합하는 『고효율·저비용』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(1) 위탁운영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
- 지방재정법 제109조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
-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
-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4조

#### (2) 시설현황

- 위치 : 사천시 동림동 산55번지의 10필지
- 사업기간 : 1998. 4. 1~2001. 12. 31
- 사업비 : 14,985백만원
- 부지면적 : 21576㎡
- 건축면적 : 4,615㎡
- 규모 : 지하2층, 지상3층(철근콘크리트 및 철골트러스)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본 동의안은 사천시 동림동 산55번지의 10필지의 부지면적 21,576㎡에 1998. 4. 1

착공하여 2001. 12. 31 완공한 사업비 149억 8,500만원이 소요된 지하 2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트레스의 건축면적 4,615㎡의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을 사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이를 민간위탁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.

-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무이고, 전문경영인이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능률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 등의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어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, 민간위탁 하여도 특별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위원	질 의 요 지	답 변 자	답 변 요 지
강 석 순 위 원 장	○ 민간위탁을 서두르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지?	문화정보실장 정대환	○ 몇 년간 직영을 해 볼 계획이었으나 행자부로부터 수탁이 가능한 모든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민간위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음. ○ 따라서 직제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.
강 석 순 위 원 장	○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, 계획이 있다면 몇 면 정도 되는지?	문화정보실장 정대환	○ 약 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면적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임.

##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- 6. 소수의견 :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시설을 1년 넘게 직영 해서 수지타산 등 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신중을 기하여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으로 봄 (김현철 위원)